

碩士學位論文

個人的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의
農業人力 活用に 관한 研究

指導教授 姜 東 一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農業經濟學科

金 龍 宮

2004年 12月

個人的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의 農業人力 活用に 관한 研究

指導教授 姜 東 一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課程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農業經濟學科 農業經濟學 專攻

金 龍 宮

金龍宮의 經濟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12月

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目 次

Summary	ii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병역의무자원의 합리적 배분 문제의 검토 필요성	4
1. 병역거부 문제의 확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훼손	4
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실태와 향후 전망	5
나. 병역거부 현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7
다. 병역거부 현상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13
2. 대체복무제도 관련 병역 부조리와 대국민 신뢰도 저하	15
가. 대체복무 실태와 향후 전망	15
나. 대체복무 제도의 한계성	16
3. 현역병을 동원한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사업의 한계	17
가.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 현황과 효과	17
나. 현역병을 이용한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의 문제점	19
4. 각국의 병역제도 개선 사례	21
가. 독일	22
나. 프랑스	24
다. 이탈리아	25

라.	이스라엘	26
마.	대만	27
III.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활용에 관한 검토	29
1.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29
가.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징병제 유지 필요성	29
나.	군복무의 가치와 병역자원의 자질	32
다.	병역거부자의 군복무 부적합성과 병역의무 이행 문제	32
라.	비군사적 업무부문 병역거부자 대체투입 검토	33
2.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활용 타당성	35
가.	농업의 산업적 특성과 노동력 수요	35
나.	농업인력지원을 위한 병역자원 동원 현황	37
다.	현역병을 활용한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의 한계	38
라.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39
마.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활용시 기대효과	45
3.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투입시 경제적 효과	47
가.	병역 부조리 감소에 의한 사회적 비용 감소	47
나.	현역병의 국방재 생산 효율성 증대	48
다.	양질의 노동력 제공에 의한 농업생산성 증대	49
라.	국제적 인권문제 해결에 의한 국가 신뢰도 향상	50
IV.	결 론	51
	參考文獻	54

A Study on the Use of Draft Dodgers with Their Individual Faith as Agricultural Manpower

YONG-GUNG KIM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DONG-IL KANG



Summary

It is inappropriate to evade military service due to individual faith in considering our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feeling; however, the uniform conscription system, in which draft dodgers cannot help but get punished even if they evade the military service, should be reformed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social climate and atmosphere.

If the military service is reformed by using the draft dodgers by means of reforming the support for the people by the soldiers in service in terms of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in food security, the soldiers in service will contribute to production of the military assets and the draft dodgers to the public assets for food security; accordingly, the rational distribution of military resources will be achieved in economic terms and social welfare will be maximize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보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여 6.25 전쟁이후 54년간 전쟁재발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고 장기적인 평화를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었기에 우리나라는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여,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군복무에 동원된 병역자원은 강력한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각종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즉각적인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대민지원사업을 전개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여 경제발전의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인력수급이 불안정한 농업부문에는 필요시마다 양질의 노동력을 지원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부문의 재해 극복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양심, 종교, 사상 등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증가, 신세대의 안보의식 변화로 인하여 병역제도와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이들에 대한 대체 복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병역 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 할 수 있는가?’라는 주요한 정치 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제 공여자로서 국방제

를 산출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논리는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국방재 산출 자체를 거부하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는 그 정당성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다.¹⁾

병역거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199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 4,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했고, 이 가운데 3,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전국의 교도소에서 약 1,600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²⁾ 여기에 편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미루고 있는 병역기피를 포함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수는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병역거부 및 병역기피자들의 증가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장병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현역병의 복무부담을 증가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훼손시키게 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현상의 원인을 규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병역의무자원의 자질과 품성에 부합되는 의무를 어떻게 부과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현역병 임무 수행이 곤란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농촌인력으로 활용하여, 현역병의 대민지원 동원을 최

1) 조일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민윤리연구 제 51호, 국민윤리연구회, 2003, p.315.

2) 한겨레 신문, 2001. 4. 18.

소화함으로써, 국방재 생산에 전념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된 병역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안보의식이 확고하고 국가적 충성심이 강한 병역의무자를 현역병으로 선발하여 전투요원으로 양성하여 국방재를 산출하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대민지원이 필요한 농업부문에 활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현역병의 복무여건이 개선되고, 병역회피를 위한 무리한 대체복무허용 요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병역자원의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의무자원의 합리적 배분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병역거부문제 해결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 사례를 참고로 병역거부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본다.

둘째,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들을 농업부문 활용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활용을 위해 군, 정부기관, 생산자단체가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대민지원 및 병역제도 관련 국방부 자료와 국내외 참고 문헌, 주제어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대민지원 현황, 세계각국의 병역제도 및 대체복무제도 운용 등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전국 주요대도시 지역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II. 병역의무자원의 합리적 배분 문제의 검토 필요성

병역자원은 국가의 안보유지와 각종 재해·재난시 국가적 위기에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제한된 병역자원을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가정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장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고, 병역의무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왜 필요한가 살펴본다.

1. 병역거부 문제의 확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훼손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란 개인의 사상 또는 종교적 믿음에 의하여 병역에 종사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상과 행위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라고 부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상과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고 하며, 이를 주장하거나 행위로 옮기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³⁾

그러나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라 칭하는 것은 국가 안보

3) 한국인권재단,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p.1

를 위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비양심적’이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양심’은 상식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⁴⁾이라 정의된다. 대법원은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진한 마음의 소리”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상의 정의나 대법원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양심은 옳고 그름 혹은 선과 악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교리나 평화주의자 혹은 부전주의자(Pacifist)라는 정치적 신념이나 개인적 의식에 근거한 병역 혹은 징집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용어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신념 또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는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정의되어야 하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병역을 동원함에 있어, 개인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양심결정의 자유’가 아닌 ‘양심 표현과 행동화의 자유’로 오인하고, 타인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거부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실태와 향후 전망

일제때인 1939년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병역 거부자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은 모두 만 여명에 이른다.⁶⁾ 2001년 12월

4) 네이버 백과사전 ‘양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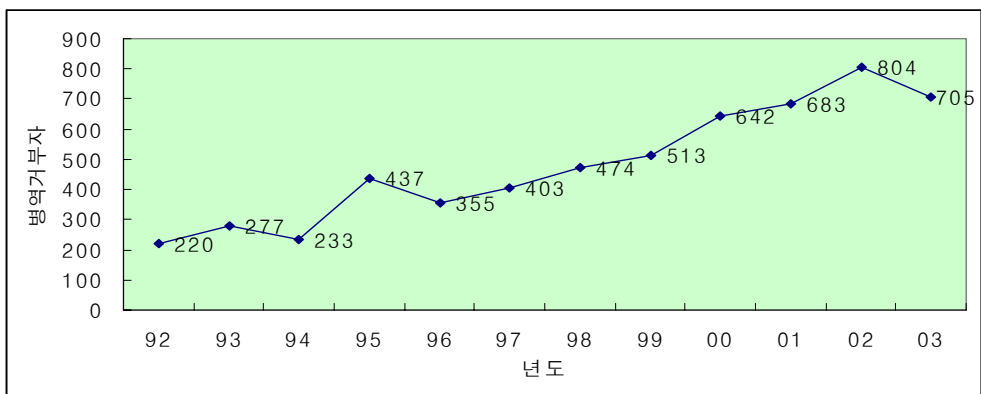
5) 헌재 1996. 3. 27, 96헌가11.

6) 윤태섭,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연구논문,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001.

불교 신자인 오태양 씨는 불교의 불살생(不殺生)의 교리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특정종교 신자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2년 7월과 9월에 유호근씨와 서울대생인 나동혁 씨가 ‘평화주의자’라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의거 근거한 비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병역거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2월 현재 521명의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만여명이 병역거부로 처벌받았다. 또한 ‘92년 220명 이었던 수형자가 ‘95년에 437명으로 두배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642명으로 세배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705명으로 늘어났다.⁷⁾

4년단위로 두배로 증가하는 현상향을 고려해 볼 때, 병역거부자는 2004년에는 1,410명, 2008년에는 2,115명으로 증가하고, 2012년이 되면 3,000여명 수준으로 병역의무자원의 1% 수준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연도별 병역거부자 현황



p.198.

7) 조이영, 동아일보, “종교 이유로 병역기피 년 700여명 감옥간다.” 2004. 3. 30

나. 병역거부 현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병역 거부 현상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우선 병역 거부의 동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병역 거부의 이유는 주로 종교적 이유에 의한 것이었다. 즉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해 인명을 살상하는 집총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주종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병역 거부는 종교적인 동기 못지않게 세속적 동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반전운동, 평화주의에 의거한 정치적·사상적 동기, 개인적 동기 등 다양한 이유에서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 비록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종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점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교파의 신자라는 사실은 병역 거부권의 행사요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일정한 가치관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⁸⁾

병역 거부자는 거부하는 전쟁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는 보편적 거부(Universalistic CO), 특정한 전쟁만을 반대하는 선택적 거부(Selective CO), 전쟁 자체엔 반대하지 않으나 대량 살상 무기, 그 중에서도 핵무기의 사용을 거부하는 재량적 거부(Discretionary CO)의 형태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 할 경우에 보편적 거부를 지칭한다.

무엇을 어느 정도 거부하는가에 따라서도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약한 형태의 병역 거부로서 군복무는 받아들이지만 단지 무

8) 이재승, “독일의 병역 거부와 민간 봉사”, <http://leekcp.new21.org>. Access: 2002. 10. 2

기사용 분야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군복무 중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쪽(예컨대 군의료반이나 취사반)에만 종사하겠다는 것을 전투행위에 대한 병역거부(Noncombatant CO)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군대체제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므로 개인과 국가 권위와의 갈등이 적은 편이다.

둘째, 가장 전형적인 병역 거부 형태로서 군복무를 대신하여 공적·사적 기관에서 대체적 공익복무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병역거부는 이 같이 군복무 대신 공익복무를 택하며, 이를 대체적 선택의 병역 거부(Alternativist CO)라 부를 수 있다.

셋째, 군복무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일체의 대체 복무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 복무 역시 군대체제를 전제하고 있으며, 군대를 사용하는 국가의 권위를 일체 인정 할 수 없다는 태도로써, 이를 절대적 병역 거부(Absolutist CO)라 부를 수 있다.⁹⁾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 훈련 대신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체적 선택의 병역 거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병역거부 현상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적용시켜 보면 병역 기피자와 병역 의무를 조망해 보는 데에 새로운 분석적 시각을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공공재의 산출에서 보여지는 문제점 즉 무임승차차(Free rider)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활용된다.¹⁰⁾

죄수A와 B가 서로 격리된 채로, 검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다. 죄수 B가 묵비권을 행사할 동안, 죄수 A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죄수 A는 석방되고, 죄수 B는 10년형을 구형받는다. 그러나 죄수B가 A와

9)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안경환·장복희 편, op.cit. p. 15 ~ 16.

10) 박효중, 「국가와 권위」 서울, 박영사, 2001, p. 411.

같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1년형을 구형받고, 뒤 죄수가 모두 자백을 하면 8년형을 구형받는다. 이 상황을 도표로 표시하면 <도 1>과 같다.

		죄수 A	
		침묵 a1	자백 a2
죄수 B	침묵 b1	-1, -10	0, -8
	자백 b2	0, -10	-8, -8

<도 1> 죄수의 딜레마 상황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도 1>의 왼쪽 행렬에 관한 것으로 <도 2>로 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죄수 B가 지배전략으로 택하는 것은 자백(비협력)이다. 그런데, 자백을 하는 이유는 죄수 A의 자백에 대비한 ‘공세전략’의 성격을 갖는다. 즉 죄수 B는 죄수 A의 협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는 ‘무임승차자’로서 행동한다. 대부분 병역 기피자는 이러한 공세적 비협력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방재가 산출되고, 자신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방재의 혜택을 향유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재 향유의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제재 메카니즘’을 운용하게 된다. 즉 병역법에서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병역 미이행자에 대해 ‘권위적으로’ 병역 의무를 강제한다.

		죄수 A
		침묵
죄수 B	침묵 b1	-1
	자백 b2	0

<도 2> 죄수의 딜레마와 공세적 비협력의 문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또 다른 한 부분은 <도 1>의 오른쪽 행렬에 관한 것으로서 <도 3>으로 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죄수 B가 지배전략으로 택하는 것은 자백(비협력)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수 B가 자백을 택하는 이유는, 앞서의 경우와는 달리, 죄수 A의 자백에 대한 ‘방어 전략’의 성격을 갖는다. 즉 죄수 B는 죄수 A의 자백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초래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자백의 전략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는 만약 죄수 A가 협력하리라는 보장이 있으면, 죄수 B도 협력하기 때문에 ‘보장의 문제(Assurance problem)’가 주요하게 등장한다. 즉 보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협력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일부의 병역 기피자는 ‘다른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는데, 나만 군대 가면 손해다.’라는 인식으로 병역 이행의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가 이러한 ‘방어적 비협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간다는 보장을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죄수 A 자백 a2
죄수 B	침묵 b1	-10
	자백 b2	-8

<도 3> 죄수의 딜레마와 방어적 비협력의 문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왜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가와 국방제를 생산하기 위해 병역 의무를 권위적으로 부과하는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런데,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앞에서 논의한 병역 기피자와는 다른 논리에서 병역을 거부한다. 그들의 병역 거부 이유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표기 되고 있으며, 대체복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는 죄수들 중에는 형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죄수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한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죄수들은 '방어적 비협력자'나 '공세적 비협력자'와 같은 '전략적 행위자'와는 구분되는 '비전략적 비협력자(nonstrategic noncooperator)'라고 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전략적 비협력자의 존재를 허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재의 산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비전략적 비협력자의 존재는 공공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조명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호가 다양하다면,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중전화라는 공공재에 대한 선호는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재화가 소비의 비경합성과 혜택의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 재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특정한 공공재와 관련하여 그것을 가치 있는 재화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공재 문제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임승차자의 문제'나 '보장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공공재에 관한 한, 산출보다 무산출을 원하고 있는 '비전략적 비협력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의 상황에서 재화를 원하지 않

는 사람은 재화를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재화를 원하는 사람만 선택의 방안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공여하는 재화는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들로서는 문제의 재화를 원하지 않더라도 향유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강제로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비전략적 비협력자가 대두된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바로 이러한 비전략적 비협력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개인적 신념에 의해 국방재라는 공공재의 산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국방재는 그 속성상 특정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국방재 생산에의 기여 의무를 유예시켜 줄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자는 ‘전략적’ 병역 기피자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쟁에 대한 협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기피하려는 사람과 전쟁 자체를 최대의 악(Summum malum)으로 규정하는 나머지, 협력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국방재를 내심으로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감안하여 기여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병역 기피자의 비협력 행위와는 다르다. 이들은 국방재 산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략적 병역 기피자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방법이 대체 복무의 허용이다.

대체복무(Selective Service)는 국방재 대신에 다른 공공재의 생산을 의미한다. 물론 대체 복무는 현역 복무 거부자의 확산과 현역병의 사기 저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전략적 병역 기피자와 비전략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대체 복무의 기간과 종류, 근무 강도의 조절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국방재의 생산을 거부하는 것이지, 공공재 생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현역 복무 이상의 의무를 부과하면 전략적 병역 기피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 즉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현역 복무와 예비군 복무, 그리고 전시 동원이 가지는 기회 비용보다는 더 큰 정도의 기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대체 복무의 기간과 종류, 그리고 근무 강도를 정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만일, 대체 복무를 허용시에는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 복무의 기회비용이 현역 근무보다 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병역거부 현상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헌법 제 39조는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병역법 제 3조에 의하여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 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 44조의 ‘항명죄’로 처벌을 받는다.¹¹⁾

우리나라에서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징역 1년 6개월 내지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입영을 거부하고 중복처벌을 받아 최대 7년까지 복역한 사례가 있다. 대부분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현역복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형을 요구한다. 이러한 법적처벌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11) 조일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민윤리연구 제 51호, 국민윤리연구회, 2003, p.319.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다양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제도하에서 병역거부자들의 법적처벌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유일한 제재 수단이다. 법적제재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으며,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병역 가용자원 인구수 및 국가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 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징병제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허용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병력 유지가 곤란하다¹²⁾ 또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 허용은 특정 종교 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역차별을 초래하게 되므로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¹³⁾

하지만,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법적처벌이 병역거부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자원이 국방재 생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동참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으로 형평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적처벌을 받는 동안 사회적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보장되려면 법적으로 형평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의무 대신 다른 방법의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면 법적 제재는 제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

12) 국방부 인사복지국 인력관리과, op. cit.

13) 국방부 인사복지국 인사관리과, op. cit

2. 대체복무제도 관련 병역 부조리와 대국민 신뢰도 저하

가. 대체복무 실태와 향후 전망

대체복무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가하여 징병제(Conscription)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국가봉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근 전쟁의 위협이 비교적 적었던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경찰 임무, 후진국의 기술지원, 평화봉사단, 시민안전단, 산림감시,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¹⁴⁾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2월 22일 최초로 현역복무의 대체복무를 방위소집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서 특례보충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학기술원생,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이 대체복무 대상이 되었으며,¹⁵⁾ 이후 잉여병역자원을 효율적 활용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중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는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는 국민 개병제 하에서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병역의무자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문의 연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예산확보가 곤란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불우한 사회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과 국제협력,

14) 병무청, 「병무행정교재 2000-3」, p. 22.

15) 병무청, 「병무행정사」, 1985, p. 35.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병역 제도는 공익 목적이나 방위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비군사 분야의 군복무 인력을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미 공익근무요원 55,000명, 산업기능요원 55,000명, 전문연구요원 15,000명, 공중보건의 1,000명 등 현역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3만명에 달하며, 의무경찰 및 상근 예비역 등을 더하면 거의 20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

나. 대체복무 제도의 한계성

대체복무제도는 군입대가 면제되고,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직역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로인한 병역비리발생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역병 입대를 강화하고 대체복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출산을 저하로 말미암아 앞으로 수년 내에 징병 가용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현행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축소와 제도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역병의 복무부담을 줄이고,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병역환경에 걸맞는 합리적인 병역제도 정착을 위해 대체복무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3. 현역병을 동원한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사업의 한계

가.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 현황과 효과

군은 전쟁 재발방지와 지속적 평화유지를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본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양한 대민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적 재해·재난 발생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지원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기상이변 현상과 함께 점차 다양해지는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군은 즉각적인 재난구조개념의 발전 등 능동적 구조·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대민지원현황 <표 2>을 살펴보면 총 534만명의 병력과 13만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년평균 107만여명의 병력과 2만6천여대의 장비가 투입되었다.**

<표 2> 최근 5년간 대민지원 현황¹⁶⁾

구분	'99	'00	'01	'02	'03	합 계	년평균
병력(명)	1,446,651	522,309	1,843,986	982,060	546,445	5,341,451	1,068,290
장비(대)	20,452	3,790	66,892	22,872	16,758	130,764	26,153

위의 대민지원 현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투입병력에 대한 인건비를 인력시장 단순노무자 기준을 고려하여 5만원으로, 장비임대료를 일반적인 중장비의 평균적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고려하여 3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5년간 투입된 병력과 장비의 가치는 약 3,063억원에 이르며, **년평균 600억원 규모의 대민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16) 군수관리실 재난관리과, “재난복구 대민지원 현황”, 국방부, 2004.

<표 3> 대민지원 추정 가치¹⁷⁾

단위 : 만원

구분	'99	'00	'01	'02	'03	계
인 건 비	7,233,255	2,611,545	9,219,930	4,910,300	2,732,225	26,707,255
장비사용	613,560	113,700	2,006,760	686,160	502,740	3,922,920
계	7,846,815	2,725,245	11,226,690	5,596,460	3,234,965	30,630,175

구체적인 대민지원 활동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점검해 보면 최근 5년간 인명구조 882명, 가옥정리 80,350동, 도로/제방복구 8,631km, 방역/소독 35,406ha, 하우스/축사복구 223,980동, 황토살포 11,205톤 등으로, 적조 현상 완화를 위한 황토살포 작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민지원은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재해에 대한 구조와 복구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모내기, 벼세우기, 농작물수확, 제초작업 등 농번기에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왔다.

<표 4> 최근 5년간 대민지원 현황¹⁸⁾

구분	인명구조 (명)	가옥정리 (동)	도로/제방 복구(km)	농경지복구 (만평)	방역/소독 (ha)	하우스/ 축사복구(동)	황토살포 (톤)
'99	578	21,079	1,020	1,429	22,274		
'00		1,493	66		5,927		
'01	124	36,252	6,813	62		36,867	5,705
'02	111	11,822	567	584	454		3,600
'03	69	9,712	165	1,184	6,851	187,113	1,900
계	882	80,350	8,631	3,259	35,406	223,980	1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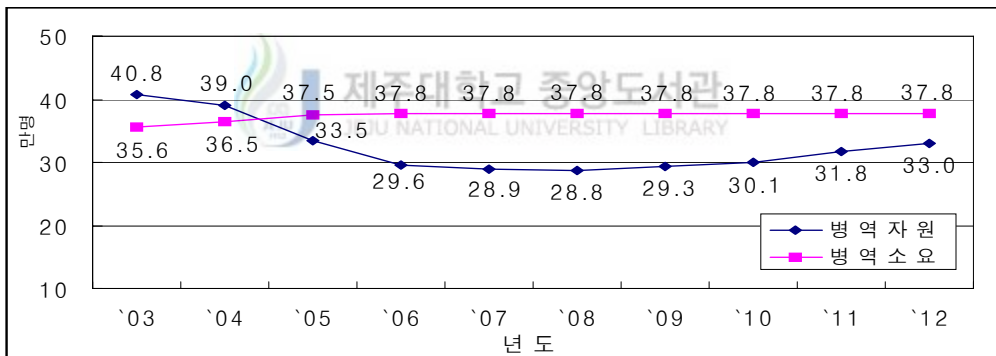
17) 국방부 “재난복구 대민지원 현황” 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추정하여 작성한 자료임.

18) 군수관리실 재난관리과, “재난복구 대민지원 현황”, 국방부, 2004.

나. 현역병을 이용한 대민지원의 문제점

현재 병역의무자원은 병역소요에 비해 장기적인 부족현상이 예상된다. <표 5>를 살펴보면 '03년 병역의무자원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의 소요는 복무단축전 연간 35만명 수준에서 복무단축후에는 연간 37만 8천명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80년대 전후 시행된 국가차원의 인구증가억제정책과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병역의무자원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8년이 되면 28만8천명 수준으로 현역병충원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표 5> 병력수급현황¹⁹⁾



장기적인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군은 국토방위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라면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민지원사업은 재해·재난사고의 긴급복구로 제한되고, 농촌일손돕기 등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민지원사업은 중단 또는 축소 지원이 불가피 할 것이다.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현역병을 활용한 군의 대민지원 사업 시행에는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예상

19) 한국국방연구원, “참여정부의 병역정책”, 2003. 5. 6

된다.

첫째, 국토방위를 위한 경계근무와 계획된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역병의 일부 병력이 대민지원사업에 투입될 경우, 다른 병력의 근무강도가 높아져 피로도가 증대하고, 경계근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민지원 기간 동안 교육훈련이 제한되어,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배양에 지장을 초래한다.

둘째, 첨단기술이 동원되는 현대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된 현역병들이 대민지원에 동원될 때 인건비 부담이 없어 경제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양성된 현역병들의 국방재 생산 참여 기간을 단축시키게 되어 국가차원에서는 고용인력을 동원할 때 보다 높은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즉각적인 대규모 인력의 동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역병이 무리하게 동원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교육훈련이 누적되어 무리한 부대 운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현역병의 근무여건은 악화될 수 있다.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현역병 입영에 대한 기피현상을 증대시키게 되고 대민지원의 성과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약하면, 병역의무자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군의 주임무인 국토방위 임무수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 사업의 추진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역병은 군의 주임무인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병역의무자원에서 현역병 선발자를 제외한 인원을 활용하여 현재 이루어져 왔던 대민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농업부문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각 국의 병역거부문제를 고려한 병역제도 개선 사례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징병제가 없는 국가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 69개국이고, 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것으로 하는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3개 국이며,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되지 않는 국가로는 엘살바도르와 남미비아의 2개국이다.

한편 징병제가 있으나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에게 민간에서의 대체봉사 또는 군내에서의 비무장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로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공화국, 헝가리, 케이프베르도, 사이프러스 등 25개 국이다. 그리고 병역거부자에게 무장한 군부대 내에서 비전투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는 2개의 국가가 있으며, 법률로는 허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는 3개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온두라스 등 48개국 이 있다.²⁰⁾

여기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대만의 병역제도와 대체복무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역병외의 복무형태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0) 윤태섭,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연구논문, 2002. 2

가. 독 일

병역 의무자로서 양심에 의거하여 군복무(Wehrdienst)를 거부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민사복무(Zivildienst)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군복무거부(Kriegsdienstverweigerung)에 대한 관리는 “양심(Gewissen)에 의거하여 전쟁을 위한 군복무(Kriegsdienst mit der Waffe)를 거부할 시 그 누구도 이를 강요할 수 없다.”라는 기본권, Art, 4Ⅲ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기본법 Art 12a와 병역법 25ff는 이들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행위(Ersatzdienst)에 대한 관련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심선언에 따라 군복무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민사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의무를 대체하며, 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현역 기본복무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군복무 거부 권리를 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군복무 거부자는 민사복무를 통하여 군복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징집을 거부하는 민사복무 신청자가 매년 연평균 약 7만 5천명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병역의무 형평성과 관련된 민사복무제의 폐단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사회의 군복무거부자 수용에 대한 기본취지가 양심 또는 종교적 사유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호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층의 군복무에 대한 근본적 회피 또는 자아에 심취된 평화주의 의식 성향의 급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96년 이후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이 1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현역 기본복무기간과의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사복무 신청자의 증가추세에 대한 연방군의 반응은 민감한 반면, 연방의회는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봉사 부문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기본법에 명시된 양심에 의거한 군복무 거부권리와 병력 감축 등에 따른 이유로 부분징집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적 상황하에서는 현행 민사복무제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은 좀처럼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군복무거부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체검사이후 현역기본복무 만기 전까지 신청에 의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즉, 현역기본복무적격자를 전제로 함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군복무거부심사위원회(Ausschuss fuer Kriegsdienstverweigerer/AFKDV)의 서류심사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때 신청자의 자필 이력서, 기본법 Art. 4Ⅲ에 따른 사유서 및 신원조회서가 첨부된다. 다만, 결정에 이의가 있을시는 면담신청과 함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3인으로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이 배석하여, 이들은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단, 위원장은 연방국방성에서 지정한 자로 만 28세 이상의 판사 자격을 갖춘 자, 위원은 청소년청의 배심 자격자로 만 32세 이상인자여야 한다.

이와 같은 민사복무를 희망하는 군복무거부자에 대한 심사는 병역법 및 군복무 거부에 관한 법(Kriesdienstverweigerungsgesetz/KDVG)을 근거로 하여 연방 청소년·가정·여자·보건성(Ministerium fue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 BMJEFG)산하 연방민사복무청(Bundesamt fuer zivildienst/BAZ)에서 '7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관장하고 있다. 연방 민사복무청은 민사복무 소집, 복무감시, 군복무거부심사, 민사복무수행 단체 협조 및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약 125,000명의 민사복무자가 병원의 앰브란스, 양로원, 재활원, 신체장애자를 고용하는 공장, 오염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환경보호분야 등 34,099 근무소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프랑스

프랑스 국민의 병역관은 이미 1783년 프랑스혁명 때 부터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프랑스는 1798년 병역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현행 병역제도도 1905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요구가 있으면, 프랑스 국민들은 이에 부응하여 군에 징집·복무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병역제도는 개편 「2015년 미래 군 모델」이 제시하는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병력이 충원된다. 즉, 국민개병주의를 바탕으로 징병제 원칙하에 일부 지원제를 혼용한 현 제도는 폐지되고, 지원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법령에 따라, 2002년말부터 10개월간의 의무복무를 수행하였던 군사역은 지원병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들은 군의 비군사적 분야에 배속 또는 사회의 봉사요원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행의 국민역법(Code du Service National)제도에 국민개병제를 채택하면서 병역의 복무형태로 군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군인형태의 현역과 방위의 필요성 등에 의거 민간인 형태(Une forme civile)의 방위단, 국립경찰의 경찰, 시민안전단, 기술지원단, 해외협력단, 양심적 병역기피자(les objectudurs de conseience)를 들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실업완화를 위해 군 징집 대상자들을 기업의 해외근무

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민개병제를 2002년부터 직업군인 제로 점진적으로 바뀔에 따라 생길 18 ~ 20세 사이 병역연령층의 대량 실업을 막는 동시에 이들에게 해외활동 경험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82년부터 그동안 ‘기업복무 계획’에 따라 10개월의 군복무 대신 프랑스 기업의 해외지점망에서 16개월간 근무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97년의 경우 3천명이 이를 선택했다.

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나, 경찰관, 소방관, 형무관 등의 근무자도 군복무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탈리아의 군은 육·해·공군이외에 헌병군이라는 특수한 군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역복무 대신에 민사복무와 비슷한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의 현역복무기간은 과거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여 감군 및 새로운 군 건설로 인한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또한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력의 방지를 위하여 장기복무 사병제도를 활성화하고 구성비율을 높여 전투력저하를 방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병역제도의 변화 배경은 무엇보다도 군 규모의 감축과 과도한 병역의무 자원의 잉여, 안보 및 국방에 대한 냉전 환경의 소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1997년을 기준으로 장교 및 하사관을 16%, 사병은 23% 감축하고, 현재 13% 수준인 직업사병을 26% 수준으로 높여, 상비군 40만명을 22만 5천명으로 약 50% 수준의 병력 감축을 단행하였다.

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병역제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일정연령의 전국민이 병역의무를 지는 남녀 의무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봉사제이다. 즉, 징병에 의한 강제봉사로 시작해서 거의 모든 가정이 포함되는 예비군 복무로 이어지는 완전한 징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의 구성은 의무 복무자와 직업군인, 예비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복무자는 18세가 되는 모든 징집대상자이며, 직업군인은 장교와 준사관으로 구분된다.

이스라엘은 328만명의 적은 유대인 인구로 17만 2천여명에 달하는 남녀 상비군 유지에 필요한 군 소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따라서 병역법에 의거 모든 시민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17세가 되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전국 5개 병력충원센터에 등록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연령인 18세에 징집됨으로써 병역의무가 시작된다. 해외 거주자나 귀화 등과 같은 사유로 18세 이후에 등록하는 자는 추후에 소집되어 감소된 복무기간을 더 연장 복무하게 된다. 의무 복무대상자중 제외되는 자는 비유대교 소수 민족과 아랍인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면제되는 전통 유대교 사람들, 일부 여성들이다.

모든 유대인 남자와 약 60%의 여성이 징집되며, 매년 남성인력 중 92% 정도가 소집된다. 나머지 8%는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합법적 면제자, 심한 불구자 등이다. 여자들도 의무 복무 인력으로 징집되기는 하지만 남자들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기준이 까다로워 약 40%의 여성은 징집되지 않는다.

현역 복무기간은 남자 3년, 여자 2년이다. 그러나 훈련기간과 비용, 기

훈련된 인력의 활용 목적 등으로 특공부대, 잠수함 장교, 정보부대등과 같은 많은 특수부대에서 더 긴 복무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의무복무 기간 중 장교가 되는 남자는 1년간 추가복무를 해야 한다. 또한 연장복무는 학교 예비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개인이 학교 공부를 마칠 때까지 군 복무가 연기되는 대신에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 그들의 전공 관련 특기 분야에서 2년간 연장 복무하게 된다. 이러한 연장 복무 부류들로 인하여 징집 인원의 상당부분이 3년보다 훨씬 길게 복무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4 ~ 5년 또는 그 이상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도 사회 기술인력의 양성과 유지를 위해 군 소요 충원을 하고 남은 잉여자원을 타정부 부처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아 국방비로 활용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과 국방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병역형평성 유지 및 특수한 국방환경하에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특례제도나 병역 대체 복무제도를 유지하지 않으며, 입영연기 및 현역 복무 외의 지원 인력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마. 대만

중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은 2000년 동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보다 4 ~ 11개월 길다. 비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경우 26개월간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경우 33개월간 사회복지, 소방, 경찰 분야에서 근무 한다.²¹⁾

21) 강주화, 국민일보 2004. 5. 21

통과된 대체복무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일반적인 대체복무자이다. 대만의 징집대상자는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대체복무자, 면제자로 나뉜다.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단, 신청자가 필요인원을 넘어서는 경우 추첨을 통해 대체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대체복무자들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각 기관으로 배치되는데 반해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2주 기초교육과 2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후 각 기관으로 배치된다. 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인 33개월이다. 심사제도가 엄격하며, 일단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유서와 회고록을 쓴 뒤 종교단체의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각 지역의 원로들이 엄격한 자격심사를 한 뒤 대만지부 차원에서 검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내정부 징집국의 심사위원회가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다. 대체복무법안은 시행조례에서 대상을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허위로 판명되거나 3번의 경고를 받으면 대체복무가 취소된다.²²⁾

22) 윤태섭,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연구논문, 2001, pp 203 ~ 208

Ⅲ.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활용에 관한 검토

앞의 장에서 주요국가의 다양한 병역제도와 현역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의 형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와는 달리 국가의 안보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강력한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회·경제적 환경이 뒷받침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안보적 상황이 이들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이 초긴장 상태로 대립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숙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등 14종의 다양한 직능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어 병역비리 발생, 형평성 훼손 등의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병역거부자 문제는 병역이행의 형평성 유지와 병역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병역거부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보적 특수성과 병역자원의 자질, 그리고 병역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1.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 우리나라 안보현실과 징병제 유지 필요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 80여개 국가중 사회봉사 또는 대체복무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비군사적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40개국 수준이며, 각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와 국방 환경상 병력감축이 곤란한 가운데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거시적 환경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안보·국방환경의 변화로 북핵문제, NLL 침범 등 안보불안이 상존한 가운데,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철수 문제로 독자 안보부담이 증대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장기 경제불황으로 경제성장률이 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세계정세의 불안과 석유 소비량 증가에 의한 유가 등급, 자유무역의 확대에 의한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단기간내 전력투자비 증대가 곤란하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80년대 전후의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 입영대상 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첨단군사기술 발전으로 미래전쟁양상이 변화하여 고학력의 우수숙련병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나 국민의 가치관 변화로 국방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병역형평성과 비리문제에 민감한 반면 본인의 병역의무 기피 성향은 높다. 이러한 국방환경의 제약요소와 경제적 부담능력의 한계는 병역제도의 개선을 제한하고 있다.

지원제 전환시 급여지급을 위해서는 현 국방비 16조원에 인건비만 8조원이 추가되어, 국방예산의 94%를 차지하게 되고, 사실상 군전력증강과 유지를 위한 비용투자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일 인건비 증가분 8조원을 추가로 국방비로 편성하게 될 경우 정부예산은 10% 가까이 증액 편성되어야 하고, 이 증가분은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전가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방비가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표 6>와 같이 정부예산의 16%, GDP의 2.8%에 수준에 불과하고, 주요 선진국가와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과감한 국방예산의 확대를 통해 첨단장비로 무장된 정예화된 군을 육성해야 할 수 있다면 징병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역제도는 서서히 모

병제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경제불황은 병역제도의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표 6> 연도별 정부재정 및 국방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경 상 GDP		521조9,592	545조113	588조6,144	638조6,466	678조1,147
정 부 재 정		88조7,363	99조1,801	109조6,298	118조1,323	118조3,560
국 방 비	총 액	14조4,774	15조3,884	16조3,640	17조5,148	18조9,412
	대GDP비율	2.8	2.8	2.8	2.7	2.8
	대재정비율	16.3	15.5	14.9	14.8	16.0

또한 병역자원 확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이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전환하게 되면 휴전선 155마일과 국토 삼면의 해안선 수천 킬로미터에 대한 경계병력의 배치는 불가능하게 되며, 감시장비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장비의 보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장비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침투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어 적 위협과 밀입국 가능성은 크게 증가하고, 국가의 안보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최근 군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현재 병력수준인 69만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영대상 자원은 필요수준의 65% 수준에 불과하며, 현 조건하에서 지원제 실시시 군 복무희망률은 1~2%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결과적으로 병역제도가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현실 여건은 증가되는 국방비 부담

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와 병역제도 형평성 확보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봉사제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군복무의 가치와 병역자원의 자질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희생정신과 전투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따라서 군인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을 겸비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한 인원은 아무리 많이 군복무를 시킨다고 해도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병역의무자의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현역병으로 선발되어야 하며, 현역병 복무의사가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공재 산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지원제로 선발하는 해병대와 특전사의 경우 타군에 비해 부대관리 부담이 적고, 교육훈련의 성과가 높은 것을 보면 병역의무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군복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라크 대사관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원들이 끊임없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완벽한 임무수행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은 자발적 동기유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다. 병역거부자의 군복무 부적합성과 병역의무 이행 문제

군인에게 있어 확고한 안보의식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유사시 전투력

으로 발휘하여 전투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데, 안보의식 수준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상의 하자만 없으면 현역 병 대상이 되는 현재의 병역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

양심, 종교, 사상 등 다양한 이유로 전투병으로써 결격사유가 있다면 현역병으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전투병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병역기피사유로 형벌에 처하는 것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없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병역의무자원의 배분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비군사적 업무부문 병역거부자 대체투입 검토

징병제의 병역제도하에서 병역이행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군대에 가야만 하고, 국가는 병역의무자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방재 산출에 있어서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를 당하면서도 병역거부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병역제도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받아드려줄만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가 입대해야 한다. 입대를 대신하여 전문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입대를 면제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역의무자 전

원을 입대시키고, 수행해야할 업무를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따라 구분하여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전투병의 경우 일정 기준을 정하여 선발한다면 우수한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전투병외의 자원은 현역병의 대민지원 투입을 대신하여 군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하면서, 직능별로 농민교육기관을 통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생산 분야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으로 ‘국방재’와 ‘공공재’가 산출되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징병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활용 타당성

가. 농업의 산업적 특성과 노동력 수요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협의의 의미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방위 및 치안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의의 의미에서는 국민이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걸쳐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안전보장을 군사적 수단과 함께 외교, 경제정책 등의 평화적 수단을 통해 확보할 뿐 아니라, 국민이 향유하는 생활을 보호한다는 안전보장도 함축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식량과 에너지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기초임과 동시에 수입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안전보장의 중요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²³⁾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는 식량안보를 “모든 사람이 어느 때라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의 확보가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식량안보가 달성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식량의 가용성과 식량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공급 안정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지역 또는 국민들의 식문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FAO, 1996)

이제는 농업을 단순한 산업분류상의 1차 산업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최근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피아를 막론하고, 무기와 식량의 공급문제였다. 이라크전 당시 미군병사들은 이라크군과 대치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어 굶주림으로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축하는것은 군사력 못지않은 국가안보의 중요요

23) 허승욱, 김호, 장원석,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pp. 102 ~ 103.

소로 대두되었고, 자연재해, 외환위기 등 국가적 위기 발생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으로써, 농업은 국가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병역거부자가 총을 드는 대신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병역 의무 이행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공해 준다. 병역거부자에게 징총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농업부문에 기여함으로써, 병역 기피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현역 군인의 대민지원 수요를 줄여, 국방에만 더욱 전념할 수 있다. 농업인력 수요가 증가되는 농번기 및 우발적 자연재해시 농업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대체복무자들이 투입됨으로 현역 군인의 대민지원 수요가 줄어들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교육훈련과 경계작전에 전념할 수 있다.

셋째, 양질의 농업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병역거부자가 군에서는 우수한 병력이 되지 못하지만, 농업부문에서는 대체복무기간중 전문성을 축적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자원에 대해서 현역복무를 강제하는 것보다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에 활용한다면, 현역 군인은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 국방력이 강화됨은 물론, 비전투병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부문에 기여하여 양질의 인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나. 농업인력지원을 위한 병역자원 동원 현황

대민지원이란 농번기 또는 자연재해시에 군주도하에 농촌일손을 돕는 것으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02년도의 경우 현역장병을 포함한 207만 명의 인력과 17,757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영농지원, 농기계수리, 기타지원활동 등 농촌일손돕기에 참가하였다.²⁴⁾ 농업부문의 노동력수요는 농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군의 대민지원사업은 단기간내에 대규모의 전문인력을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안정적 영농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표 7> '02년도 농촌일손돕기 현황

구 분	분 야	지원실적	참여인원(명)	동원장비(대)
영농지원	소 계	-	729,118	2,571
	모심기/벼베기	53,036 정보	409,368	1,854
	밭작물과수수확	2,689 정보	110,244	354
	농경지정리복구	1,662 정보	162,030	270
	농수로보수	232 km	35,352	36
	기 타	32 회	12,124	57
농기계수리	소 계	17,646 대	9,780	648
	트랙터	954 대	846	96
	이앙기	768 대	672	36
	콤바인	-	-	-
	경운기	2,994 대	3,504	168
	기타기계수리	12,930 대	4,758	348
기타지원활동	소 계	-	1,332,210	14,538
	의료지원	60,078 명	5,466	180
	방역활동	690 개소	1,146	13,926
	환경정화	11,838 톤	1,325,598	432
합 계		-	2,071,108	17,757

24)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 '02년도 농촌일손돕기 실적' <http://www.mnd.go.kr> 2003.

다. 현역병을 활용한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의 한계

장기적인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군은 국토방위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민지원사업은 상당 부분 축소지원이 불가피 할 것이다.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하에서 현역병을 활용한 군의 대민지원사업 시행에는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국토방위를 위한 경계근무와 계획된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역병의 일부 병력이 대민지원사업에 투입될 경우, 다른 병력의 근무강도가 높아져 피로도가 증대하고, 경계근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민지원 기간 동안 교육훈련이 제한되어,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배양에 지장을 초래한다.

둘째, 첨단기술이 동원되는 현대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방예산을 투자하여 교육된 현역병들이 대민지원에 동원될때 인건비 부담이 없어 경제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국방재 생산 참여에 제한을 주게 되어 국가차원에서는 실직자를 고용하여 동원할 때보다 높은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즉각적인 대규모 인력의 동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역병이 무리하게 동원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교육훈련이 누적되어 무리한 부대운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현역병의 근무여건은 악화될 수 있다.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현역병 입영에 대한 기피현상을 증대시키게 되고 대민지원의 성과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약하면, 병역의무자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군의 주임

무인 국토방위 임무수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민지원 사업의 추진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역병은 군의 주임무인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병역의무 자원중 현역병 선발자를 제외한 인원을 활용한 대민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후의 대민지원사업은 인력지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긴급한 재해·재난의 응급조치와 식량안보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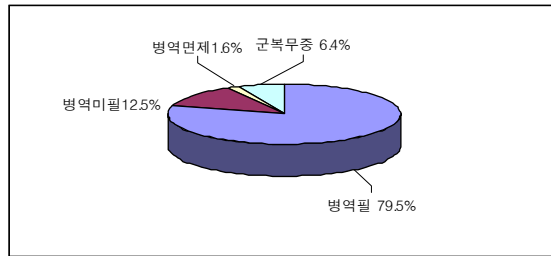
라.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근들어 식량의 무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세계 쌀과 밀, 옥수수 거래의 대부분을 미국, 일본계열의 곡물메이저가 장악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식량의 생산은 과잉되어 버려지고 있으나, 빈곤으로 굶주리고 있는 인구가 20억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문제도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자유무역 구조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리의 농업이 위기의 상황하에서는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병역의무자원중 현역병 임무수행이 부적합한 병역자원의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병역거부자를 농업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는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활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대전, 대구, 포항, 제주지역에서 각각 200명씩 총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04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1차 면접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04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차 보강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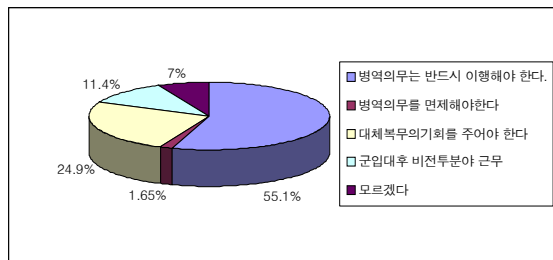
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 52.1%, 여자가 47.9%로 남성의 비율이 4.2% 높았고, 남성의 군복무 경험은 병역필 79.5%, 병역미필 12.5%, 군복무중이 6.4%로 병역면제자는 1.6%에 불과하여 강도 높은 징집제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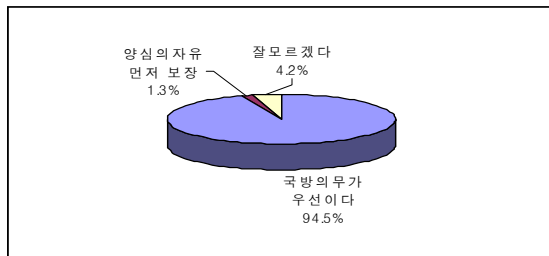
<도 4> 남성 응답자 군복무 경험

종교, 양심 등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이행에 관해서는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24.9%, 군입대후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1.4% 인데 반해, 병역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하여,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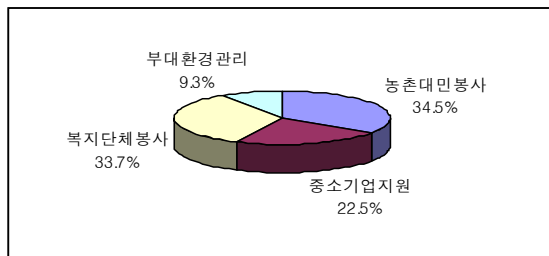
<도 5>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이행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가 우선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4.5%를 차지하였으며, 양심의 자유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3%, 잘모르겠다는 의견은 4.2%로 소수였다.



<도 6>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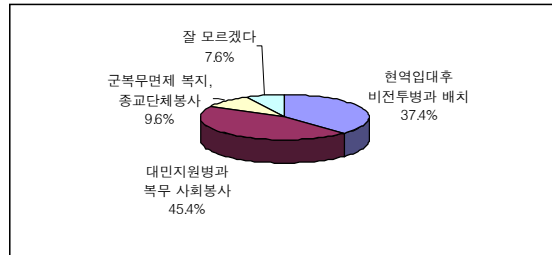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군복무시 적당한 업무로는 농어촌 봉사 34.5%, 사회복지단체 봉사 33.7%, 중소기업 인력지원 22.5% 부대내 환경관리 9.3% 순이었다.



<도 7> 병역거부자의 군복무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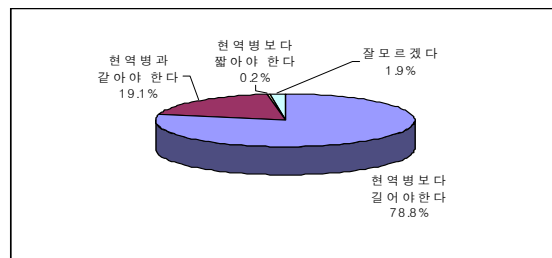
대체복무 허용시 바람직한 복무형태는 현역병과 똑같이 입대 후 현재 운용되는 비전투병과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37.4%, 대민지원병과를

신설하여, 현역병과는 분리하되 군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 였으며, 군복무를 면제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시설에서 봉사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9.6%, 잘모르겠다는 의견이 7.6%로 소수였다.



<도 8> 대체복무허용시 바람직한 복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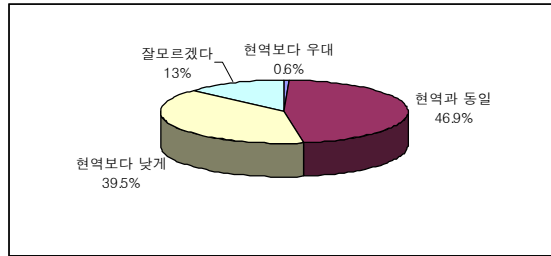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시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보다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78.8%, 현역병과 같아야 한다는 19.1%로 복무기간에 있어 현역병보다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으며, 짧아야 한다가 0.2%, 잘모르겠다는 의견은 1.9% 였다.



<도 9>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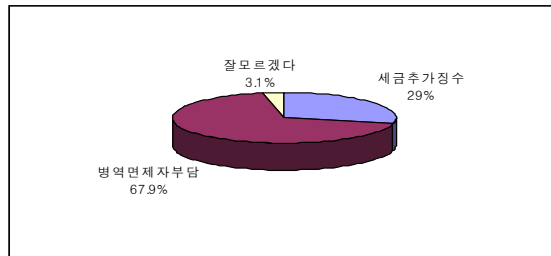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시 대우는 현역병과 같아야 한다는 의견이 46.9%, 현역보다 낮은 대우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39.5%로 현역병과 같거나 낮은

대우가 다수의견이었으며, 잘모르겠다 13%, 우대해야 한다 0.6%로 소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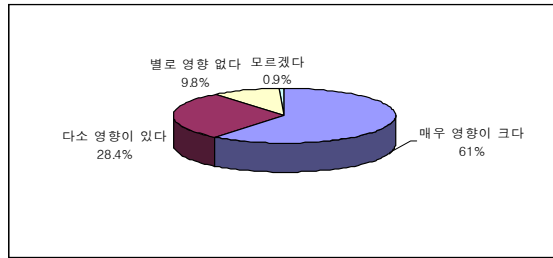
<도 10>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시 대우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병역제도 변경시 추가되는 국방비 조달은 병역면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67.9%로 병역을 면제 받게 된다면 그 부담은 병역면제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하였다. 세금추가징수 의견은 29%, 잘모르겠다는 의견은 3.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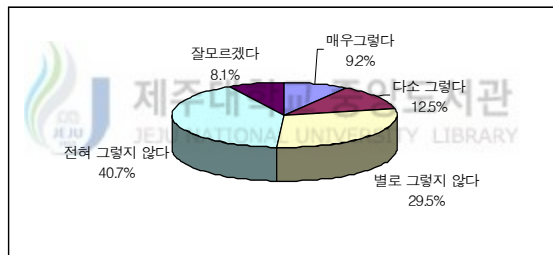
<도 11> 병역제도 변경시 추가 국방비 조달

병역제도 변화로 병력감축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영향이 크다 의견이 61%, 다소영향이 있다 의견이 28.4%로 병력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 12> 병력감축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병역거부자의 농업부문 대체복무가 국방의무 이행상 형평성에 어긋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0.2%로, 그렇지 않다 또는 모르겠다는 의견 29.8%에 비하여 다수 의견이었다.



<도 13> 대체복무의 형평성 위배여부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군복무 경험이 있고, 징병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녀 공히 공감하는 사항이며,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거나, 권리 이행에 앞서 의무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병역제도의 변화로 발생하는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병역면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병역제도 변화시 국가안보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뚜렷하였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법으로 군입대후 별도의 대민지

원병과 또는 비전투병과 배치를 선호하였으며, 업무분야로는 농촌봉사, 사회복지단체 봉사 등이 선호되었으며, 농업부문에 인력지원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였다.

마. 병역거부자의 농업인력 활용시 기대효과

현재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은 1,600명 수준이다. 이들은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축내기만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병역의무대신 대민지원사업에 참가하게 하였을 때 사회적 후생 증대에 기여도는 크게 달라진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1,600명의 병역의무자가 대민지원사업에 참가한다고 가정하고, 주5일제를 적용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대민지원 사업에 동원된다고 가정하면 '04년의 경우 251일간 대민지원이 가능하고, 년인원으로 환산하면 401,600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를 1일 5만원으로 환산하면 200억 8천만원에 이른다.

'03년도 대민지원사업에 투입된 병력이 546,445명 수준 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수감중인 병역거부자들을 활용하였다면 동원병력의 73%를 충당할 수 있었으며, 비용측면에서도 이들의 인건비와 현역병이 국방재산출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된 기회비용이 같다고 가정하면 국가적 손실규모는 401억 6천만원으로 현역병 동원시 추정인건비 273억 2천만원의 146%에 해당되는 규모의 기회비용이 손실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비용은 교도소에 수감을 할때나 대민지원에 투입할 때나 거의 차

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을 관리하는 비용은 교도소에 수감하여 법무부에서 부담하건, 대민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하면서 국방부에서 부담하건, 결국은 동일한 규모의 국가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3. 병역거부자 농업인력 투입시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병역 부조리 감소에 의한 사회적 비용 감소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가 입대해야 한다. 입대를 대신하여 전문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입대를 면제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약물을 투입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수백명이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된 인원이 다른 목적으로 근무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싸고 각종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병검사에서 입대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 가능 여부만을 가리고, 모든 병역자원은 입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굳이 입대를 면제시키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입대 후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여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현역병의 경우 일정 기준을 정하여 선발한다면 우수한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현역병외의 자원은 군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직능별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대민지원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으로 ‘국방재’와 ‘공공재’가 산출되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징병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은 1,600명 수준이다. 이들은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처벌을 받

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축내기만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병역의무대신 대민지원사업에 참가하게 하였을 때 사회적 후생 증대에 기여도는 크게 달라진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1,600명의 병역의무자가 대민지원사업에 참가한다고 가정하고, 주5일제를 적용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대민지원 사업에 동원된다고 가정하면 '04년의 경우 251일간 대민지원이 가능하고, 년인원으로 환산하면 401,600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를 1일 5만원으로 환산하면 200억 8천만원에 이른다.

'03년도 대민지원사업에 투입된 병력이 546,445명 수준 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수감중인 병역거부자들을 활용하였다면 동원병력의 73%를 충당할 수 있었으며, 비용측면에서도 이들의 인건비와 현역병이 국방재 산출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된 기회비용이 같다고 가정하면 국가적 손실규모는 401억 6천만원으로 현역병 동원시 추정인건비 273억 2천만원의 146%에 해당되는 규모의 기회비용이 손실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비용은 교도소에 수감을 할때나 대민지원에 투입할 때나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을 관리하는 비용은 교도소에 수감하여 법무부에서 부담하건, 대민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하면서 국방부에서 부담하건, 결국은 동일한 규모의 국가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나. 현역병의 국방재 생산 효율성 증대

병역거부로 인하여 수감된 인원을 대민지원에 활용하게 되면 현역병은 대민지원 투입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경계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투병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여 양성된 현역병이 대민지원에 투입되게 되면 ‘공공재’생산에 투입되는 기간만큼 ‘국방재’ 생산참여의 기간이 단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재’ 생산에 참여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교육훈련을 위해 투자한 국방예산은 손실되게 된다. 그 이유는 군사훈련을 받은 현역병이나 받지 않은 인원이나 대민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식 군사교육을 이수하여 전투병으로 양성된 현역병들은 ‘국방재’생산에 참여하고, 현역병 이외의 병역의무자가 대민지원의 형태로 농업부문에 참가하여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생산에 참여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후생은 증대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다. 양질의 노동력 제공에 의한 농업생산성 증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한해 600 ~ 700여명 발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개 연대 규모의 대민지원 전담 부대의 창설이 가능하며, 기존 부대편성이 아닌 대민지원부대의 형태로 전문부대가 창설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징총 거부를 사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던 병역거부자들의 입대거부 사유가 사라지게 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며, 현역병과 동일한 대우가 가능해져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논란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둘째, 대민지원 업무를 전문화하여 체계적인 농촌일손돕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숙련된 전문이 집중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농업인력난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되어 군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기존 현역병들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된다.

셋째, 대민지원부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입영생활을 하면서도 기존 현역병들과의 자연스러운 분리가 가능하여 상호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며, 전문화된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제대 후 농업관련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라. 국제적 인권문제 해결에 의한 국가 신뢰도 향상

국제연합인권위원회는 1997년 결의를 통해 ‘어떤 정치적·종교적 이유, 또는 종교내 어떤 교파이든 신념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받아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2004년 5월 21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져 병역거부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후 현재까지도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권한이고, 우리의 안보현실이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형벌위주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국가적 이미지가 훼손된다. 따라서 법률적 처벌이외의 방법을 강구하여 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V. 결 론

남북이 반세기 동안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교리, 양심, 사상 등 개인적 신념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황이나 국민정서에 비취어 볼때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명을 살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벌만을 가할 수 밖에 없는 획일화된 병역제도는 시대변화에 부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병역의무자원중 전투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질과 품성을 겸비한 자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군사교육훈련을 통하여 현역병으로 양성하여 ‘국방재’ 산출에 기여하도록하고, 현역병으로 선발된 자원을 제외한 병역의무자원은 대민지원병으로 편성하여 대민지원을 통한 ‘공공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제 우리의 병역제도는 경제적 실리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병역의무자원은 누구나 군대에 간다. 그러나 임무는 다르다’는 병역제도의 기본 원칙이 성실될때 병역이행의 형평성은 달성될 수 있으며, 병역거부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법적제제를 받지 않게 될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되며,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나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민지원병이나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에 기여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현역병외의 병역자원을 농업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과 농업관련기관, 농업생산자 단체의 아래와 같은 체계적 협조가 요구된다.

첫째, 군의 병역자원관리체계와 시설을 이용하여 인력관리 비용을 최소화 해야한다. 병무청의 전산화된 병역자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

병검사 관정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불능자를 선별하고, 적격자는 모두 입대조치하여, 병역자원의 자질과 품성에 따라 현역병과 대민지원병으로 구분한 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병역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병역자원의 감소와 첨단장비의 발달에 따른 병력감축의 진행으로 현재 군내에는 비교적 양호한 시설들이 공실로 유지되고 있으며, 군이 보유한 중장비중에 일부는 군의 주요한 공사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장비로, 군의 유휴시설과 장비를 적극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시설확보와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거부자만 고려한다면 1,600명 수준으로 1개 연대 규모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대규모로 분산 관리한다면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서는 병력감축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며, 현역병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전용하여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장비의 도입이 없이 대부분의 임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의 소요는 법무부에서 교정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정도로 군 입대조치에 예산상의 문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둘째, 직능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업분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 농업분야 대민지원 업무에 편성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군사교육 대신 직능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군자체적으로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 교육 프로그램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농촌지도소 등 농업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능별 임무에 부합되는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병력관리를 위한 간부요원과 교관요원의 보충만으로도 짧은 기간내에 임무수행이 가능한 대민지원병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대민지원병으로 활동한 병역자원의 경우 복무기간중 다양한 기술과 전

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현역병보다 사회적응에 유리할 것이며, 군 입대후 복무하기 때문에 병역면제자라는 사회적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히려 복무기간 중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생산자 단체의 소요 제기와 성과분석에 따른 합리적 인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시 동원가능한 대민지원병의 보유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현역병을 소집 동원하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하게 되고, 분야별로 다양한 기능들이 발휘되어 농번기 또는 자연재해시 인력난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의 시스템에 의한 병력관리가 이루어지고,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소요제기에 의해 병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원된 병력의 투입성과를 보고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면 성과의 산출이 용이해지고, 성과에 따른 병력배분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인력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노동력의 수요가 불규칙한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농기계의 조작이 가능한 양질의 전문화된 인력이 투입되게 되므로 전문성이 없는 현역병이 투입되는 것보다 농업부문 인력난 해소에 효과가 높을 것이다.

參考文獻

- 국방부, 『국방백서』, 1999-2002,
- “국방예산통계”, 2004.
-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 개요”, 2004. 10
- 한국국방연구원, “참여정부의 병역정책”, 2003. 6.
- 함택영, “한국 국방정책의 도전과 선택”, 경남대학교학회지 제19권 4호,
통권 43호, pp. 91-121. 2003.
- 조일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2002.
- 윤태섭,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2001.
- 고영환, “모병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 노혁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단
국대학교, 2002.
- 허승욱·김호·장원석, “우리나라 식량안보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단국대학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29권 제1호, 2002. 3.
- 정철영·이무근·이용환·나승일·허영준,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
력 육성의 문제점,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3권 제1호, 2002.
- 정철영,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인력 양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4권 제 4호, pp. 1 ~ 24.
- 폴에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설문조사’ ‘02.10.8~23, www.pollever.com

감사의 말씀

너무도 부족함이 많은 글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 편의 논문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움을 전해야겠지만, 먼저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와 논문이 이루어지기까지 미흡한 저를 세심한 배려와 격려로 지도해주신 강동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줄고를 정성스럽게 다듬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강경선 교수님, 현공남 교수님, 강지용 교수님, 김경택 교수님, 유영봉 교수님, 고성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못난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배움을 다하지 못한 큰형, 작은형과 항상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아껴주시는 장인, 장모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걱정해 주신 양가 친척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질책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제 삶의 큰 스승이신 이귀숙 선생님, 제가 시인으로 세상을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신 시인 황금찬 선생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항상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고 김광영 박사님, 고 정주영 회장님의 영전에 이 글을 받치겠습니다. 바쁜 부대 일 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논문 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대대장님과 연대장님, 선후배 장교 및 부사관, 그리고 빨간 명찰하나로 뭉쳐진 전우와 부하들에게 감사드리며, 제대후에도 저를 찾아주는 해병예비역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일에만 매달리느라 가정에 소홀함이 너무도 많은 남편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와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를 이해해주고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는 사랑하는 아들 태양이에게 이 논문을 작은 선물로 선사합니다.

2004. 12

김 용 궁